

전임교원 신규임용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신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원인사규정 제19조에 근거한 교원 신규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학과라 함은 학부, 학과 또는 전공을 의미한다.

제3조(관할과 임용시기) ① 교원의 신규임용은 교무처가 관할한다.

② 교원의 신규임용은 매 학기 초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임용대상과 인원) 총장은 개별 학과의 신청을 기초로 신규임용 대상 분야와 인원을 확정한다. 단, 학과신설이나 본 규정에 따른 신규채용이 어려운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공개임용의 원칙) 신규교원은 공개임용의 방법으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신규교원임용을 위한 채용공고는 일간지 광고, 전자통신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15일 이상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자격, 등의 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임용자격) 교원은 본교 교원인사규정 제8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국가공무원법 제33조 해당자)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인
2. 그 외 제반사항은 교원인사규정 제21조에 따른다.

제2장 임용지원

제7조(신규임용지원 제출서류) ① 교원 신규임용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별표1]과 같다.

② 임용지원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 이는 임용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③ 예.체능계열 교원을 신규임용 하는 경우 전공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표2]의 표를 기준으로 한 최근 4년 이내 실기실적물 전체를 제출한다.

제3장 임용심사절차

제8조(심사단계) ① 신규채용심사는 1차 심사(서류심사), 2차 심사(기초 및 전공심사), 3차 심사(면접심사), 4차 심사(종합심사)를 필수적인 과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고, 시범 강의 및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1. 서류심사(1차 심사) : 서류심사는 지원자의 임용지원서와 연구 및 실기 실적물을 기초로 서류제출 여부, 교수자격 등 지원자의 기본적인 자격요건에 대한 심사를 목적으로 한다.
2. 기초 및 전공심사(2차 심사) : 기초 및 전공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후보자와 모집대상 분야와의 일치여부와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한다.
3. 면접심사(3차 심사) : 2차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에 대한 가치관 및 신앙관과 인성 등을 심사한다. 단 필요한 경우 공개한 강의나 연주 등을 실시할 수 있다.
4. 종합심사(4차 심사) : 3차까지 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와 제반 서류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본교 교원에서의 임용 추천대상여부에 대한 적격여부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제4장 서류심사(1차 심사)

- 제9조(서류심사)** ① 서류심사는 각 학과별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을 3인 이내로 학과장이 정한다.
- ② 모집 및 지원인원여부에 따라 서류심사를 각 학과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은 교무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③ 지원자가 본교의 공고된 자격여부 및 제출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며 1차 서류심사 결과 결석사유가 발생하는 대상자는 불합격처리하며 채용 심사를 진행시키지 않는다.
- ④ 채용분야별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서류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기초 및 전공심사(2차 심사)

- 제10조(기초 및 전공심사위원회 구성)** ① 기초 및 전공심사위원회는 학과 교수, 외부인사로 구성하되, 심사위원의 3분의 1이상은 본교 소속교원이 아닌 자로 선임한다.
- ② 학과교수 또는 유사전공 교수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선임하고, 외부인사는 채용분야와 동일 내지 유사전공자로 하되, 교무처장이 선임한다.
- ③ 심사위원은 3명에서 5명 이내의 인원으로 정한다.
- ④ 신실학과 또는 당해학과 소속교원이 부족한 경우 교무처장은 유사분야를 전공한 타학과의 전임교원을 내부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외부 심사위원의 부적격)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외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지원자의 박사학위취득 대학에서 재직하는 자
2. 지원자의 현 재직기관에 재직하는 자
3. 지원자의 학위논문 지도교수
4. 지원자의 추천인 또는 공동연구자

제12조(기초 및 전공심사) ① 기초심사는 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지원자를 개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4.05.01. 개정)

1. 지원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 여부, 지원자의 경력·학력과 제출서류와의 일치 여부 등을 ‘일치’ 또는 ‘불일치’로 판정한다.(2024.05.01. 개정)
 2. 심사위원은 당해 지원자가 전공 불일치로 판단되더라도 아래 제3호에 따라 최종 불일치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당해 지원자의 심사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3.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사결과 심사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전공일치로 판정되었을 경우, 전공 일치로 최종 판단한다.
 4. 교무처장은 기초심사에서 전공 불일치로 최종 판정된 지원자를 2차 전형(기초심사)의 기초 및 전공심사결과 총괄표[별지 제4호 서식]의 전공심사란을 공란으로 하여 전공심사 최종평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② 전공심사는 심사위원이 개별적으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 후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전공심사 평가기준은 [별표 2] 전공심사 평가기준표에 따라 실시한다.

③ 기초 및 전공심사위원장은 제2항에 의거 전공심사 결과를 확인한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초 및 전공심사 결과 총괄표를 작성하여 교원인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면접심사 및 시범강의(3차 심사)

제13조(면접심사) ① 면접심사위원은 해당 학과장을 포함하여 교무위원회에서 정한다.

- ② 면접심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접심사 평정표’[별지 서식 제5호]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1. 교육자로서의 인품과 열정, 사명감
2.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 학생지도 및 진로지도 능력
3. 연구분야에 대한 업적과 경력, 전문성
4. 학과 및 학교 발전계획
5. 신앙관 및 교회봉사 및 지역봉사, 건학이념 부합여부

③ 교무처장은 제2항에 의거 면접심사 결과를 확인한 후 즉시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하여 면접심사결과 총괄표를 작성한다. 이때 면접점수 최종 환산점수는 면접심사위원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으로 산정하여 산출한다.

④ 교원인사위원장은 채용 분야별 채용인원의 3배수까지 성적 상위자 순으로 면접심사 대상자로 부의한다. 지원자가 두 사람일 경우에는 삼배수가 되지 않더라도 심사한다. 단, 전공점수가 60점미만일 경우 면접심사 대상자로 부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지원자의 현황 및 학과의 특성에 따라 면접심사대상자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시범강의심사) ① 시범강의는 필요에 따라 시행하고 평가한다.

② 시범강의 심사위원은 교무위원으로 하며, 필요시 외부 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은 [별지 제 7호 서식]에 따라 심사를 하고, 시범강의 심사평정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④ 시범강의가 진행될 경우 면접심사 총괄 점수표는 [별지 제 8호서식]에 따라 산출한다.

제7장 종합심사(4차 심사)

제15조(종합심사) ① 종합심사위원은 교원인사위원으로 하며,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기초 및 전공심사, 면접심사 결과를 확인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지원자에 대한 본교의 정체성 부합, 학문분야 적합성, 발전가능성, 학문능력과 교육능력 등을 다양한 방면으로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② 학교 설립이념에 맞지 않는 교회 및 단체 소속일 경우에는 합의하여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양한 방면을 고려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과반수이상이 부적격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제8장 기타

제16조(최종평가결과 확정) ①기초 및 전공심사결과, 면접 및 시범강의 평가 점수, 종합심사의 합을 각 임용 후보자의 최종점수로 한다.

② 최종평가결과를 토대로 총장에게 임용할 인원의 2배수 추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자수, 최종평가점수 등에 따라 단수추천을 할수 있다. 총장은 이의가 없을 경우 추천된 인원중에서 해당임용자를 정하여 이사회에 제청한다.

제17조(심사위원의 비밀 준수 의무) 신규교원임용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임용지원자의 신원과 평가사항 및 인지한 사실에 대하여 비밀 준수 의무가 있다.

제18조(지원서류의 반환) 제출된 서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30일까지 지원자 채용서류반환청구서를 통해 반환을 요청할 경우 반환한다.

제19조(주의규정) 교원을 신규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 후를 기준으로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2/3를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규 채용된 대학교원이 당해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더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동 대학에서 채용되어 교육, 연구 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를 동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되, 연간 채용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채용인원이 3명 이상이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신학 관련 학과는 예외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 년 1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4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원 신규임용 지원자의 제출서류

1. 전임교원임용지원서 및 개인정보제공 이용동의서(본교 소정양식) 1부
2. 자기소개서 (본교 소정양식) 1부
3. 대학 및 대학원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1부
4. 경력(재직)증명서(지원서에 기록된 사항 일체) 각 1부
5. 연구실적물(최근 4년 이내)
 - 1) 최종학위 논문 원본 1부(분야별 해당자)
-외국어로 된 학위논문은 한글 요약본 작성 필수(번역자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2) 지원서에 기재한 연구실적물 원본(또는 별쇄본)
-논문 게재된 확인자료도 같이 첨부
 - 3) 연구실적물 산정기준
-연구실적물은 최근 4년 이내의 국제전문학술지(SSCI, SCI, SCIE, A&HCI),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후보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연구실적물의 인정환산율은 본교 교원업적평가 규정을 준수한다.
-예체능계열은 연구업적 인정환산율도 본교 교원업적평가 규정에 따른다.
6. 저서 및 역서
 - 1) 최근 4년 이내만 인정
 - 2) 단독저서, 단독 역서, 단독 편저, 공동저서만 인정
☞ 출판협회(ISBN) 인정 출판사에 한함
7. 외국 박사학위 소지자는 한국연구재단의 외국박사 학위 등록필증 사본 제출
8. 출입국 사실증명(외국학위 소지자) 1 부.
9. 교육계획서 1 부.(강의담당 가능과목과 중, 단기 교육 계획서, 학교 및 학과발전계획)
10. 출석교회 당회장 추천서(목사인 경우 노회장 추천서) 1부.
11. 수세증명서(목사인 경우 해당없음)
12. 병적확인서류(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3. 기타 학교에서 지정된 서류

[별표 2] 전공심사 평가기준표(2024.05.01. 개정)

■인문사회계열

항목	평가 내용
학력(10)	1)박사학위 소지자는 10점, 박사과정 수료자는 7점, 석사학위는 3점 2)박사학위가 석사학위 전공영역과 다를 경우 3점 감점(신학과) 3)모집학과 전공(석사 박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각 3점 감점(신학과 이외)
교육경력(10)	1) 최근 4년 이내 대학에서 1년간 9시간 이상 강의를 담당한 경우 1년에 3점 배점, 1년간 4시간 이상 9시간 미만인 경우 1점 배점 2) 고등학교 교원 경력자는 50% 3) 국가 및 공공전문연구소 전문연구원 1년에 1점
최종학위 논문의 우수성(10)	연구내용과 채용분야와의 연관성 여부와 학문적 공헌도 및 우수성을 평가함 *탁월: 10점 우수: 8점 보통: 5점 다소 미흡: 2점 연관 없음: 0점
연구업적(30)	최근 4년간 이내의 것으로 본교 교원업적평가 규정에 의거 연구업적 비율에 따라 배점 1) 800% 이상 30점 2) 700% 이상 27점 3) 600% 이상 24점 4) 500% 이상 21점 5) 400% 이상 18점 6) 300% 이상 15점 7) 200% 이상 12점 8) 100% 이상 9점 9) 50% 이상 3점 10) 50%미만 0점
지역서(20)	1)단독저서: 전문 연구 저서는 권당 5점 2)단독역서: 전문 단독 역서는 권당 4점 3)단독편저: 전문 단독 편저는 권당 3점 4) 공동저서는 아래와 같이 배점 2명 공저: 3점 3명 공저: 2점 4명이상 공저:1점 *단, 지역서 출판사는 출판협회(ISBN)인정 출판사에서 한함
전공분야 적합성(20)	전공 및 학문분야, 교육경력등이 본교의 건학이념과 정체성 등에 적합 여부 매우 적합(20) 대체로 적합(16) 보통(10) 부적합(5) 매우 부적합(0)

■음악계열

항목	평가 내용
학력(15)	1)박사학위 소지자는 15점, 박사과정 수료자는 10점, 석사학위는 5점 2)해외 유럽 음악대학원의 Master 혹은 그에 상응한 수준의 유럽지역 Diploma 소지자는 12점까지 배점한다.
교육경력(15)	1)최근 4년 이내 대학에서 1년간 12시간 이상 강의를 담당한 경우 1년 에 5점 배점, 1년간 6시간 이상 12시간 미만인 경우 3점 배점, 1년간 2시간 이상 5시 간미만 1점 2)고등학교 교원 경력자는 50%
연주경력(50)	최근 4년간 이내의 것으로 본교 교원업적평가 규정에 의거 연구업적 비율에 따라 배점 1) 800% 이상 50점 2) 700% 이상 45점 3) 600% 이상 40점 4) 500% 이상 35점 5) 400% 이상 30점 6) 300% 이상 25점 7) 200% 이상 20점 8) 100% 이상 10점 9) 50% 이상 5점 10) 50%미만 0점
전공분야 적합성(20)	전공 및 학문분야, 교육경력등이 본교의 건학이념과 정체성등에 적합 여부 매우 적합(20) 대체로 적합(16) 보통(10) 부적합(5) 매우 부적합(0)

■미용전공

항목	평가 내용
학력(10)	1)박사학위 소지자는 10점, 박사과정 수료자는 7점, 석사학위는 3점 2)박사학위가 석사학위 전공영역과 다를 경우 3점 감점(신학과) 3)모집학과 전공(석사 박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각 3점 감점(신학과 이외)
교육경력(10)	1) 최근 4년 이내 대학에서 1년간 9시간 이상 강의를 담당한 경우 1년에 3점 배점, 1년간 4시간 이상 9시간 미만인 경우 1점 배점 2) 고등학교 교원 경력자는 50% 3) 국가 및 공공전문연구소 전문연구원 1년에 1점
실무경력(20점)	1) 국내 현장경력 5년이상 10점 2) 국내 현장경력 3년이상 8점 3) 국내 현장경력 2년이상 4점 4) 해외현장경력 3년이상 10점 5) 해외현장경력 2년이상 8점 6) 해외현장경력 1년이상 4점
연구업적(20)	최근 4년간 이내의 것으로 본교 교원업적평가 규정에 의거 연구업적 비율에 따라 배점 1) 800% 이상 20점 2) 700% 이상 18점 3) 600% 이상 16점 4) 500% 이상 14점 5) 400% 이상 12점 6) 300% 이상 10점 7) 200% 이상 8점 8) 100% 이상 5점 9) 50%이상 2점
저역서(10)	1)단독저서: 전문 연구 저서는 권당 5점 2)단독역서: 전문 단독 역서는 권당 4점 3)단독편저: 전문 단독 편저는 권당 3점 4) 공동저서는 아래와 같이 배점 2명 공저: 3점 3명 공저: 2점 4명이상 공저:1점 *단, 저역서 출판사는 출판협회(ISBN)인정 출판사에서 한함
기타경력(10점)	1) 자격증(5점) -전공관련 국가자격증 3개이상 5점, -전공관련 국가자격증 2개이상 3점 ※민간자격증 불인정 2) 수상경력(5점) -장관급 이상 1회당 2점, -대학총장급이상 1회당 2점 - 기타 공인대회 1점
전공분야 적합도(20)	전공 및 학문분야, 교육경력 등이 본교의 건학이념과 정체성 등에 적합 여부 매우 적합(20) 대체로 적합(16) 보통(10) 부적합(5) 매우 부적합(0)

서류 심사 결과 보고서(1차 심사)

▶학과명:

연번	학과	초빙분야 (전공)	성 명	심사결과(P/F) 충족:P 미충족: F	미충족 사유(아래 참조)
1					
2					
3					
4					
5					
6					
7					

*미달사유

1. 구비서류 미비
- 2.교원 자격요건(교육 및 연구 경력) 미충족
3. 초빙공고 기준 해당되는 자격요건 미충족
4. 기타 사유가 있을 경우 적을 것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인) / 심사위원: (인) /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장: (인)

교무처장 귀하

기초심사 평정표 (2차 심사)

▶학과:

▶ 채용분야:

연번	세부전공	성명	지원자의 전공분야와 채용분야와 전공일치도 (우수: A 보통: B 미흡: C)	지원자의 경력·학력과 제출서류와의 일치 여부 (일치: P, 불일치(F))	비 고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직명:
성명: (인)

◆심사기준 및 방법

1. 1차 서류심사에서 통과한 분에 한해 심사함.
2. 취득학위, 최종논문, 연구실적물이 채용분야와 전공의 연계성 여부를 고려하여 평가
3. 전공일치도는 우수: A 보통: B 미흡: C 로 평가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A 이상이 될 경우에만 전공일치가 되어 적격인 P로 최종판정)
4. 경력·학력이 제출서류와 일치 여부는 일치할 경우: P 불일치할경우:F로 평가함
(심사위원 모두 일치로 판정할 경우만 적격인 P로 최종판정)
5. 전공일치도 및 제출서류 일치여부 모두가 적격일 경우에만 기초심사 최종 합격판정

기초 및 전공심사 결과 총괄표

▶학과:

▶초빙분야:

연번	성명	세부전공	기초심사(적격:P/부적격:F)	전공심사 최종평점(100)	비고

20 년 월 일

기초 및 전공 심사위원장: (인)

◆심사기준 및 방법

- 1. 기초심사는 적공일치로 적격인 경우 P, 전공불일치로 부적격인 경우 F로 표시
- 2. 전공심사 최종평점은 100점 만점으로 하고, 각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로 산출됨.

교원인사위원장 귀하

면점심사 평정표(3차 심사)

▶학과:

▶초빙분야:

연 번	세부 전공	성명	심사항목					합계(100)
			교육자로서의 인품과 열정,사명감 (20)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 학생지도 및 진로지도 능력 (20)	연구분야에 대한 업적과 경력. 전문성 (20)	학과 및 학교 발전계획 (20)	신앙관, 교회봉사 및 지역봉사, 건학이념 부합여부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직명:
성명: (인)

면접심사결과 총괄표(3차 심사)

▶ 학과:

▶ 초빙분야:

연번	세부전공	성명	면접심사 최종평점(100)	비 고

◆심사기준 및 방법

- 1.면접심사의 최종평점은 100점 만점 환산한다.
- 2. 최종평점점수는 각 심사위원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으로 산정한다.

20 년 월 일

확인자 교무처장 성명: (인)

종합심사 평정표

▶학과:

▶초빙분야:

연 번	세부전공	성명	서류심사 (P/F)	기초심사 (P/F)	전공심사 (100)	면점심사 (100)	점수합계 (200)	종합심사 (P/F)

◆심사기준 및 방법

1. 앞에서 진행해온 심사절차 및 심사결과를 다시 한번 검토한 후 본교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본교 교원으로 추천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심사하여 평정함.
2. 지원자에 대한 본교의 정체성 부합, 학문분야 적합성, 발전가능성, 학문능력과 교육능력 등을 다양한 방면으로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함.
☞P: 본교에 전임교원으로 임용하기에 적합하고 추천할 만한 대상일 경우
☞F: 본교에 전임교원으로 임용하기에는 아직 부적합하거나 보류할 사항이 있는 경우
- 3.교원인사위원의 과반수이상이 부적격 판단될 경우 채용하지 아니함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직명:
성명: (인)

임용심사 최종평정 결과표

▶학과: ▶초빙분야:

1. 심사결과 집계표

연번	세부 전공	성명	서류심사 (P/F)	기초심사 (P/F)	전공심사 (100)	면점심사 (100)	점수합계	종합심사 (P/F)	추천순 위

2. 최종임용 추천대상자

연번	세부전공	성명	임용기간	임용구분(정년,비정년 등)	비 고

평정결과 위와 같이 하기로 하다.

년 월 일

확인자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 : (인)

대신대학교 총장 귀하